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합10398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윤덕주

변론 종결2023. 5. 31.

판결 선고2023. 8. 2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미화 227,000.8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227,000.8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국 상하이에서 원단을 만들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납품한 회사이고, 피고 B는 D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지불각서 작성경위 및 그 내용

- 1) 원고는 2017. 11. 27.부터 2018. 7. 23.까지 D에 미화 394,660.99달러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D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2) 이에 D는 2018. 9. 6. 원고에게 미화 394,660.99달러를 2018. 9. 7. 미화 100,000달러, 2018. 9. 21. 미화 200,000달러, 2018. 10. 30. 미화 94,660.99달러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 3)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지불각서상 D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성명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의 변제 등

- 1) 피고 B는 2018. 9. 7. 원고에게 미화 7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 2) 원고는 2018. 9. 21. D 및 피고 B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미화 200,000달러를 지급하지 못하자, 위 지불각서에는 물품대금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D에 공급하지 않았던 미화 57,482.96달러 상당의 원단을 D에 공급하지 않았다.
- 3)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10. 4. 미화 26,339.93달러, 2018. 10. 24. 미화 13,837.22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

피고 B는 2018.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두바이에 소재한 'E'의 벤더로 등록하여 원고가 E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E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마. D와 피고 B의 파산

1) D는 2018. 11. 2.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3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12. 7.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다가 2020.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2) 피고 B는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0061호, 2019하면1000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3. 18.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9. 11.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9. 11.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지불각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화 394,660.99달러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미화 110,177.15달러(= 2018. 9. 7.자 미화 70,000달러 + 2018. 10. 4.자 미화 26,339.93달러 + 2018. 10. 24.자 미화 13,837.22달러) 및 원고가 위 지불각서에 물품대금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은 원단 가액인 미화 57,482.96달러를 각 공제한 미화 227,000.88달러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 B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화 227,000.8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1.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면책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대표자인 피고 B는 2018. 9. 6. 직접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4달만인 2019. 1. 9.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가 원고를 E의 벤더로 등록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 B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피고 B에게 E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와 2019년부터 2020. 1.까지 미화 358,308.44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 미화 11,359.77달러(= 미화 358,308.44달러 × 5% - 원고가 일부 지급한 수수료 미화 6,555.65달러, 센트 미만 버림) 상당의 수수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지불각서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의 벤더로 등록되어 거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에 E와 거래를 하고 있었던 D가 아닌 피고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수료율을 원고와 E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로 정했으며, 원고의 E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가 미화 358,308.44달러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이 사건 지불각서상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는 피고 B이고 피고 B가 피고 C의 도장을 위 지불각서에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 C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로서 D의 감사를 맡았다거나, 피고 C이 피고 B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 C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중 피고 C의 연대보증인란 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 C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연주

판사임휘재

판사유지혜